

우주항공청 공고 제2026-0024호

2026년도 우주소형무인제조플랫폼실증사업(R&D) 신규과제 공고

우주항공청이 추진하는 「우주소형무인제조플랫폼실증사업」의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3월 13일

우주항공청장 오 태 석

※ 관련 법령 개정 등 주요한 변경사항 발생 시 수정 공고문 게시 가능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우주환경에서의 전주기* 제조플랫폼 개발·실증을 통해 민간의 우주 신산업 진출 및 생태계 조성 기반 마련
 - * 발사 및 궤도 투입 - 고도조정 - 우주제조 - 탈 궤도 - 지구로의 회수
- (사업기간/예산*) '26.4. ~ '30. 12. / 총 475억원('26년 30억)
 - * 정부출연금 기준
- (사업내용) 국내기술 기반 우주 소형 무인제조플랫폼을 개발·활용하여 우주환경에서의 우주제조 및 제조 결과물을 회수하는 전주기 실증* 수행
 - * ('29년) 실험 수준의 우주제조, ('30년) 플랫폼 보완 및 시제품 수준의 우주제조
 - 우주제조 전주기 실증을 수행할 제조모듈, 회수선, 궤도변경추진체로 구성된 플랫폼 개발
 - 개발된 플랫폼의 우주환경 전주기 실증을 위해 우주수송, 궤도임무 및 우주제조, 회수·착륙 등 운용기술 개발
- (수행주체) 산·학·연 컨소시엄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학 또는 연)

2. 지원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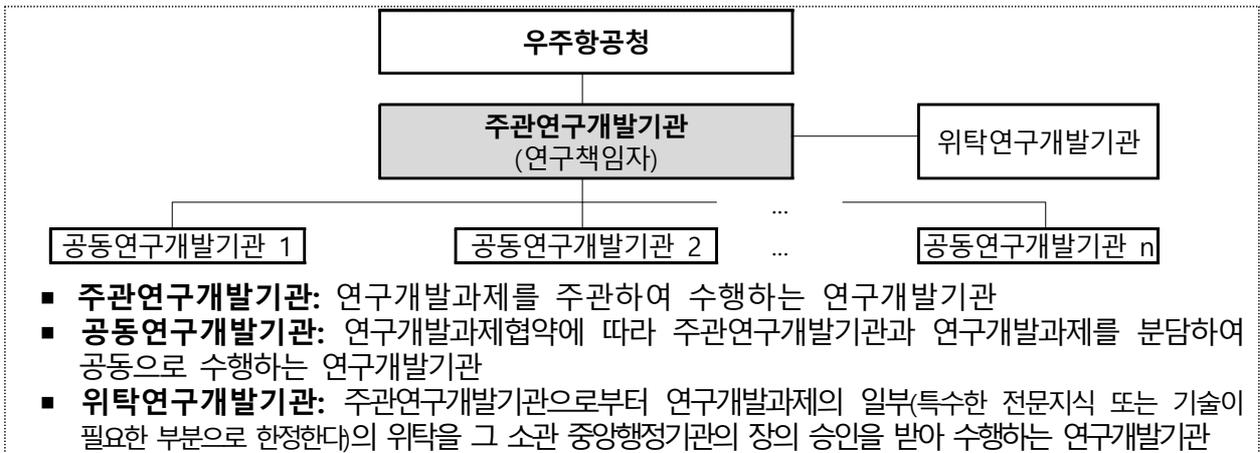
○ (선정규모) 1개 과제

사업명	총 연구기간 (26년 연구기간)	선정 과제수	총 연구비 (정부출연금)	비고
우주소형무인제조플랫폼 실증사업	'2026.4.~'2030.12 ('2026.4.~'2026.12)	1	47,500백만	상세내용 붙임 RFP 참조

- ※ 민간부담금은 동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국비와 별도로 매칭하여 부담하여야 함.
- ※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정부예산 상황 등에 따라 전체/연도별 연구비는 변동될 수 있음.
- ※ 과제 접수 및 평가 진행상황에 따라 연구개시 월 변경 가능
- ※ 본 사업의 정산업무는 동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회계법인 위탁 수행 예정이며, 이에 따른 위탁정산수수료는 별도 계상하여야 함.
- ※ 간접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7조2항4호에 의거하여 5% 적용

3.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 사업수행체계



□ 신청자격

○ (주관기관) 대학 또는 출연연

< 주관기관 신청 자격 구분 >

구분	신청 자격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
출연(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관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기관

○ (권소시업 참여기관) 산·학·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 및 단체

혁신법 제2조(정의)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3.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② 연구개발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2.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3.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해외기관 참여 시, 참여 형태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별도 사전 협의

○ 연구책임자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6조 및 제7조의 요건을 갖춘 자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1.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 2.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 3.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
- 4.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5.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6. 연구개발성과 창출·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
- 7. 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1.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 2.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그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
 - 3.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 ②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신청 제한

-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연구개발계획서 제출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

※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59조 제1항

-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3책5공)** 모든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는 5개 이내로 하며, 이 중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3개임

※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

※ 주관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경우 '책',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는 '공', 그 외 참여연구원은 '공'

※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

※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3책 5공)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선정 취소(협약해약) 사유에 해당

※ 해당 사유로 선정 취소 발생 시, 해당 RFP 선정평가 결과 차순위 과제 우선 선정

- **(인건비 계상률*)**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모든 연구자는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인건비 계상률 총합이 100%****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인건비 계상률은 실제 과제 참여하는 정도가 아닌 인건비 및 연구수당 계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 종전의 참여율 개념은 폐지됨(산식=해당연도에 해당과제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로 계상한 금액/연 급여)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경우 총 과제 수행 계상률이 130%를 초과한 경우

- **(과제기획 참여자)** 해당 과제 과제제안요구서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 과제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함

- **(지원제외)** 연구에 참여하는 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의 부도
- ②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③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④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 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⑤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 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 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적용 예외
- ⑥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 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 단, 전년도 자본잠식에 따른 자격제한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당해연도에 자본금 이상의 투자유치를 달성하여 자본전액잠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재무건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아 연구개발기관 자격 제한에서 제외
 - * 최근 회계연도말 결산기준 자본총계 + 당해연도 자본금 증가분이 "0" 이상인 경우(단, 자본금 증가분은 상환의무가 없는 보통주(우선주) 자본금에 한함)
- ⑦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단, 비영리 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않음

- 접수 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주관/공동/위탁) 및 연구책임자(주관/공동/위탁) 등이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 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 (연구기관 구성 제한) 동일한 연구개발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 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함

- * 동일기관 여부: 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판단(협약시, 법인인증서 사용)
- ※ 사업자등록번호는 다르나 법인등록번호가 같은 기관의 경우, 동일기관으로 협약체결 불가
-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 중 동일 기관으로 구성된 모든 과제는 상위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동일기관 과제 구성 제한 사례별 신청 가능 여부 >

연구개발기관 구분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사례5
주관연구개발기관	A기관	A기관	A기관	A기관	A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1	B기관	A기관	B기관	B기관	B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2	C기관	B기관	B기관	C기관	C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D기관	D기관	C기관	A기관	B기관
사례별 신청 가능 여부	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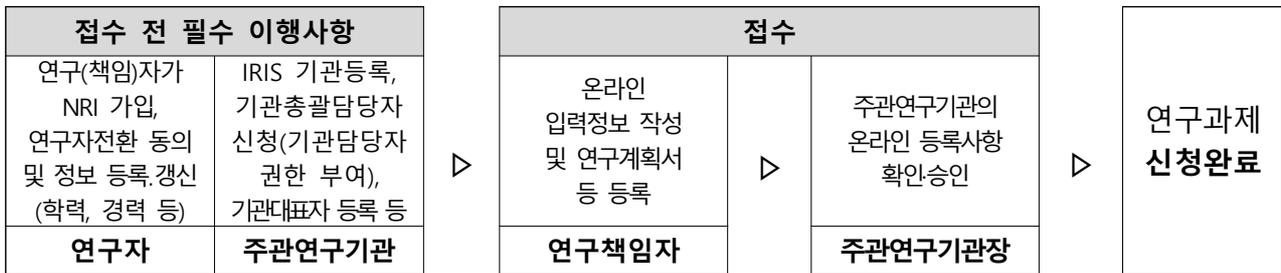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및 절차 안내

-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운영하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해 과제 신청, 평가 및 관리 업무 진행

* IRIS(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 각 부처 및 전문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 자세한 접수 방법은 IRIS 사용 매뉴얼(연구자용 접수 매뉴얼) 참고([접수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접수 오류의 귀책은 신청자에게 있음](#))

※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연구기관 승인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

-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한 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 신청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별첨]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KISTEP IRIS운영단)
[별첨] IRIS 회원가입(연구자 전환)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 1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에서 연구자전환 동의를 통해 국가 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등록 필수

* 경력정보의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을 완료한 과제, 현재 수행신청 중인 과제 목록
- ①, ② :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 ③ : 연구책임자만 필수

- 2 (주관연구개발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 또한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필수.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에 대한 조치 필요

※ 주관연구개발기관 선택 유의사항

- 1) 매뉴얼 : [별첨] IRIS 주관연구개발기관 선택 및 승인권한 관련 안내 참조
- 2) 과제신청 시, 주관연구개발기관명은 '00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아닌, "00대학교"로 신청요망
- 3) 주관연구개발기관 정보(기관대표자 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담당자 승인권한 부여 등) 등록 필수
- 산학협력단 기관담당자가 승인권한을 득한 경우, 산학협력단 과제뿐 아니라 본교명(00대학교)으로 신청한 과제까지 모두 승인 가능

※ 현재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만 기관정보(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 등)가 등록되어 있어, 접수마감까지 <00대학교>로 정보 변경 및 신청이 어려운 경우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도 신청가능

◆ 관련문의(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각 1부(HWP)
- 기타증빙 각 1부(PDF)

<제출서류 목록>

구분		항목명
연구개발 계획서	필수제출 서류	연구개발계획서
		첨부1. 연구책임자 기존 수행과제와의 차별성*
		첨부2. 연구책임자 대표적 연구실적 증빙자료
	선택제출 서류	첨부3. (해당 시)계상률 조정계획서 및 계상률 현황
		첨부4. (해당 시)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첨부5. [협약용] 안전관리 계획 등
		첨부6. [협약용] 평가의견에 대한 수정·보완 대비표
	첨부7. [협약용, 해당 시]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계획	
기타증빙	필수제출 서류	1.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2.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3. [협약용]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 Data Management Plan)
	선택제출 서류	4. (해당 시)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 기업 참여 시 필수제출서류로 구분
		5. (해당 시) 지자체 지원확약서

* <http://ntis.go.kr>에서 제안과제와 최근 5년(2021~2025) 이내 유사 과제 검색후, 해당과제에 대해 차별성 기재
 ※ 양식에서 [협약용]으로 표시된 서류는 선정된 과제가 협약 시 작성함

□ 제안서 보완요구

- 제출된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제안이 불명확하여 인지하기 곤란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우주항공청이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안서 보완 요구에 대해 기한 내 보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를 시행하고, 제출된 내용이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 제안서 관련 제출자료의 반환 및 평가 및 연구관리 목적 사용

-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된 모든 서류는 우주항공청의 재산으로 귀속되며, 반환을 요구할 수 없음
- 우주항공청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된 모든 서류들을 평가와 관련된 기관이나 개인에게 공개할 수 있으나 평가 및 연구관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음

□ 연구계획서 분량 제한

- 목차 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까지 내용을 50페이지 이내 작성

※ 제한 분량 미준수시 평가 결과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5. 신청기간 및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기간

구 분	내 용
공고 기간	2026. 3. 13.(금요일) ~ 4. 13.(월요일) 18:00까지
접수 기간	2026. 3. 30.(월요일) 09:00 ~ 4. 13.(월요일) 18:00까지 *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 (18시 이후 수정 또는 제출 불가)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연구책임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획서 등록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검토·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로 인정

- 연구책임자 및 연구수행기관은 접수기간 내에 계획서 등록(신청완료) 및 기관검토 요청 및 검토·승인까지 반드시 모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간 내에 신청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불가하며, 계획서 업로드 시 오류가 발생 가능하므로 연구자 신청마감 최소 3일 전까지 업로드를 권장

□ 신청 시 유의사항

- 응모자가 없는 경우 10일간 재공고하며,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미접수일 경우 추가 공고할 수 있음
-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해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정
 - ※ 단독 응모인 경우, 전문가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지원 대상 과제로 선정, 대상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할 수 있음
- 과제제안요구서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필수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 내용 중복, 신청자격 미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 평가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
-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최초 공고일('26. 3. 13.) 기준임
 - 단, 참여제한의 경우 신청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개발계획서 및 기타증빙자료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 IRIS 접수매뉴얼 확인 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
 - 알림/고객 → 자료실 → IRIS 사용 매뉴얼 '접수매뉴얼'다운로드

6. 선정방법 및 절차

□ 추진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제14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 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4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기관의 공모)

□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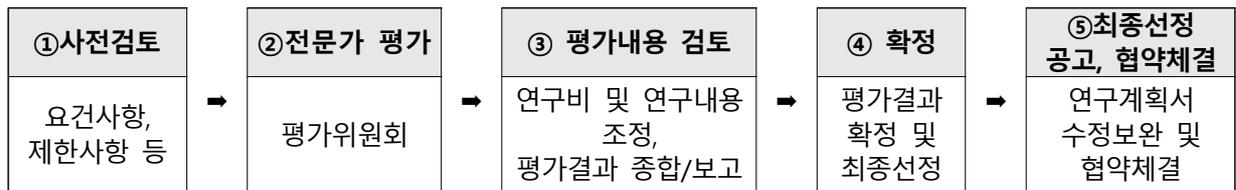
- 과제 RFP별 추진 목적에 부합하고, 연구 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은 우수한 신규과제를 선정
- 연구개발계획서를 바탕으로 발표평가를 통해 주관연구개발기관을 선정
- 평가의견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연구계획서에 반영 후 최종적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협약체결
- 평가점수 60점 미만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단독응모의 경우 70점 미만)

□ **평가 방법:** 발표 또는 서면평가

○ '26. 4월 중 평가 실시(발표방법 및 시간 등 세부일정은 추후 안내)

※ 외부 요인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평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신청자에 한해 별도 안내 예정(세부 일정은 접수마감 이후 평가계획 확정 후 개별 안내 예정이며, 평가일정 변동 가능)

□ **평가 절차**



① 사전검토

- 제출서류 구비 여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단체·연구자에 대한 참여제한 대상 여부, 신청 자격 적합 여부, 과제와의 유사·중복성 등 검토

② 전문가 평가

- 평가방법 : 해당 연구책임자의 신청서 내용과 발표를 토대로 평가
- ※ 평가대상 과제 수에 따라 서면평가(필요시) 등을 통해 발표평가 대상과제 선정 가능
- ※ 동점 과제의 경우 높은 배점의 평가항목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③ 평가내용 검토

- 전문가 평가 결과, 예산사정, 관련 규정 등 검토 후 과제별 예산규모 및 과제 구성 등을 조정하여 선정(안)을 수립
- 복수 응모의 경우,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해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정
- 단독 응모인 경우, 전문가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지원 대상 과제로 선정

④ 우주항공청 확정

- 선정(안)을 대상으로 평가결과의 타당성, 공정성, 연구비 대비 적정성, 정책적 고려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하고 지원 예산 규모 내에서 선정 과제를 최종 확정

⑤ 최종선정 공고 및 협약체결

-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 평가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을 조정한 결과를 반영한 협약용 계획서를 제출받아 확인 후 협약체결

□ 평가 지표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연구수행 체계/전략의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제안요구서와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 부합성 * 연구 범위·내용 등 ○ 플랫폼 개발 및 우주제조 전주기실증 수행전략 및 추진체계의 타당성·창의성 ○ 실증에 필요한 발사 및 지구로의 회수, 위험요소 등 관리계획의 구체성 	45
추진기관·인력의 전문성/연구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소시엄의 연구수행 및 운영·지원 역량 ○ 연구책임자의 사업에 대한 전문성 및 관리능력 ○ 참여인력의 역량 및 인력배분의 적합성 	35
연구성과의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사업화 방안 등 성과물의 활용계획의 우수성 ○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과의 부합성 	10
연구비 집행계획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일정/비용의 적정성 	10
총계		100

※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높은 배점의 평가항목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연구수행 체계/전략의 적합성(45점) → 주관기관·인력의 전문성/연구역량(35점) → 연구성과의 활용(10점)→ 연구비 집행계획의 적정성(10점))

7. 기타사항

- (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함
-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의함

※ 관련 규정 조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gaia.go.kr>)

- 본 사업은 혁신도전형 앞으로(APRO) 연구개발 사업군 지정 사업으로, 상세 수행에 대한 사항은 관련 규정* 참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 법령, 매뉴얼,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의 지정 및 분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등

□ 혁신도전형 앞으로(APRO) 연구개발 사업군

- **(개념)** 세계 최고 또는 최초 수준을 지향하여 실패가능성은 높으나 성공시 혁신적 파급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R&D 사업
 - ※ 혁신도전형 R&D사업군은 밀착관리형/공개경쟁형으로 유형이 나뉘며, 본 사업은 밀착관리형으로 추진
- **주요 내용 (밀착관리형)**
 - **(정의)** 혁신도전형 과제의 기획, 선정, 평가 등 연구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총괄 관리자에게 부여되어 밀착 관리
 - **(총괄관리자 선정)** 주관부처에서 사업관리 전문성을 보유한 인원을 사업총괄관리자로 별도 지정하여 사업 밀착관리
 - **(주요 혜택)** 평가등급 폐지·연구장비 도입 시 수의계약 가능 및 연구관리 자율성 부여 등

- 연구개발비 규모에 해당하는 위탁 정산 수수료를 직접비 내 연구 활동비에 반영하여야 함

<참고> 2026년 위탁정산수수료

※ 위탁정산수수료 = 표준수수료 + 가산금																
연구비 규모 * 당해연도 정부출연금	표준수수료(부가세 포함) '26.1.1.~'26.12.31. 기간 내 신규 협약체결 과제	비고														
1억원 미만	987천원	* (가산금) 공동연구개발기관 수에 따라 가산금 부가 - 국외연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은 제외 ○ 공동연구개발기관 수에 따른 가산금 <table border="1" style="margin-top: 10px;"> <thead> <tr> <th>공동연구기관수</th> <th>가산금</th> </tr> </thead> <tbody> <tr> <td>0개</td> <td>없음</td> </tr> <tr> <td>1개</td> <td>표준수수료의 10%</td> </tr> <tr> <td>2개 이상</td> <td>누적으로 계상하되, 1개 기관 추가시 마다 표준수수료의 5% 추가계상 (산식: 표준수수료의 10% + (N-1)×5%)</td> </tr> </tbody> </table> ○ 연구개발기간에 따른 가산금 <table border="1" style="margin-top: 10px;"> <thead> <tr> <th>연구개발기간</th> <th>가산금</th> </tr> </thead> <tbody> <tr> <td>1년 이하</td> <td>없음</td> </tr> <tr> <td>1년 초과</td> <td>표준수수료매 년도별 상시점검이 수행된 연구개발비 기준 수수료의 15%씩 가산 * 공동 연구개발기관의 수에 따른 가산금 포함</td> </tr> </tbody> </table>	공동연구기관수	가산금	0개	없음	1개	표준수수료의 10%	2개 이상	누적으로 계상하되, 1개 기관 추가시 마다 표준수수료의 5% 추가계상 (산식: 표준수수료의 10% + (N-1)×5%)	연구개발기간	가산금	1년 이하	없음	1년 초과	표준수수료매 년도별 상시점검이 수행된 연구개발비 기준 수수료의 15%씩 가산 * 공동 연구개발기관의 수에 따른 가산금 포함
공동연구기관수	가산금															
0개	없음															
1개	표준수수료의 10%															
2개 이상	누적으로 계상하되, 1개 기관 추가시 마다 표준수수료의 5% 추가계상 (산식: 표준수수료의 10% + (N-1)×5%)															
연구개발기간	가산금															
1년 이하	없음															
1년 초과	표준수수료매 년도별 상시점검이 수행된 연구개발비 기준 수수료의 15%씩 가산 * 공동 연구개발기관의 수에 따른 가산금 포함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185천원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515천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647천원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1,845천원															
30억원 이상	2,043천원															

○ (협약 시)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서 제출

- 본 과제 선정 시, 「국가연구개발 정보처리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데이터의 생산·보존·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계획인 ‘데이터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계획서 첨부 양식)

※ 연구데이터란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사실 자료로서 연구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말함

- 연구책임자가 DMP에 명시한 시점, 장소, 기간, 포맷대로 연구수행 중 또는 연구종료 후 데이터를 공개 및 공유해야 함

※ 데이터 생산 당해연도 등록(과제기간 중에는 데이터 생산 목록만 공개, 논문특허 등 성과 발표시 실 데이터 공개)

○ 사업설명회 개최 안내

-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의 주요내용 및 특이사항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일정 및 장소에 대해서는 우주항공청 누리집을 통해 추후 공지 예정.

8. 향후 일정

일정	내용
2026. 3. 30.(월) ~ 4. 13.(월)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신청 마감일)
2026. 4월 중	평가 실시(발표 또는 서면)
2026. 4월 중	선정통보 및 예비선정 공고
2026. 5월 중	협약 체결

※ 평가 및 선정, 협약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9. 문 의 처

□ 문의 절차

- 문의 전 공고문, FAQ 등 확인
- (1차) 연구자 → 주관연구개발기관
- (2차) 주관연구개발기관 → 우주항공청

□ **공고문 및 양식 확인 방법**

-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 우주항공청 (<https://www.kasa.go.kr>) → 알림 → 사업공고

□ **문의처**

- 문의사항별 담당부서가 다르므로 문의처 구분 확인 요망

	과제제안요구서 등	과제접수/평가/절차 등	전산등록/사업관리시스템(IRIS)
문의처	우주과학탐사임무보증프로그램 (☎ 055-856-5331) jkang1008@korea.kr	임무지원단 (☎ 055-856-5016) kasarnd@korea.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 대표 이메일 : kasarnd@korea.kr

붙임 1. 우주소형무인제조플랫폼실증사업 RFP

별첨 1. 연구개발계획서(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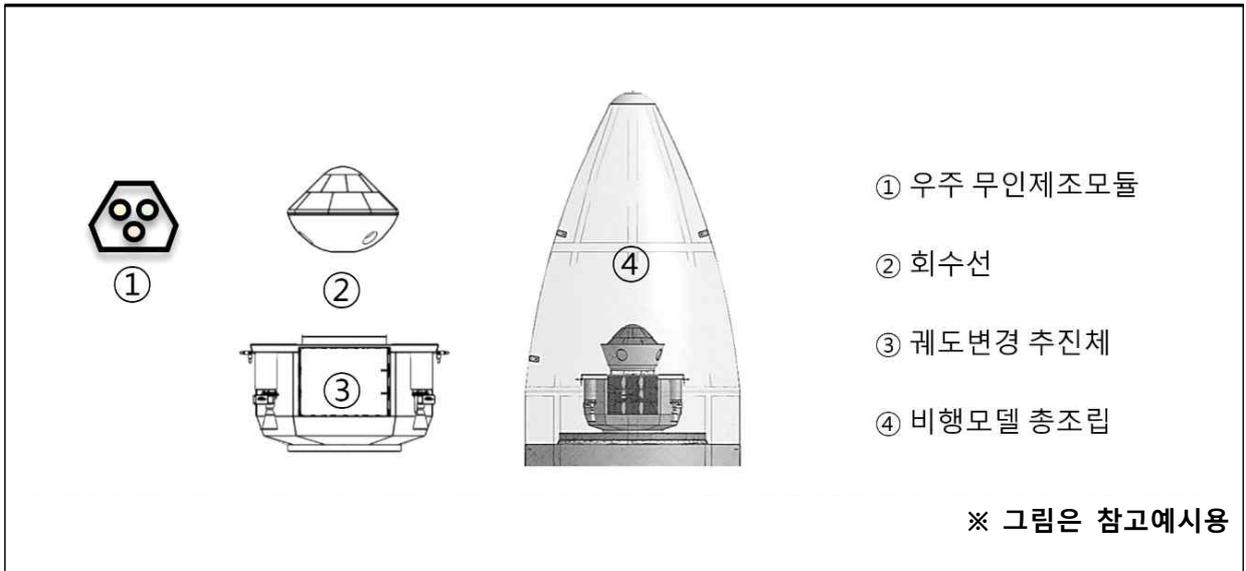
2. 기타증빙(양식)

붙임1

우주소형무인제조플랫폼실증사업 RFP

RFP 번호	-	공모유형	지정공모
사업명	우주소형무인제조플랫폼실증사업		
과제명	우주소형무인제조플랫폼실증		
연구 목표	<p>○ 국내기술* 기반 우주제조 헤리티지를 확보하기 위해 소형 무인제조플랫폼을 개발하여 우주 환경에서의 우주제조 및 제조 결과물을 회수하는 전주기 실증을 수행</p> <p>* 기개발된 국내 요소기술,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우주제조플랫폼 개발·실증추진</p> <p>- (플랫폼 확보) 국내기술 기반 제조모듈, 회수선, 궤도변경추진체로 구성된 플랫폼(2기) 개발</p> <p>- (플랫폼 실증) 플랫폼을 소형발사체에 탑재하여, 우주제조 전주기 실증(2회)* 수행</p> <p>* ('29년) 실험 수준의 우주제조, ('30년) 플랫폼 보완 및 시제품 수준의 우주제조</p>		
배경 및 필요성	<p>○ 배경</p> <p>-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수정계획(25.11.)」에 따라 세계적 수준의 민간주도 우주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임무인 우주생산(제조)의 실증과 사업화를 지원</p> <p>- 「대한민국 우주과학탐사 로드맵(25.11.)」을 통해 저궤도 우주공장 구축 및 고부가가치 신산업 창출을 위한 단계적 목표*와 실행계획 마련</p> <p>* (1단계) 저궤도 우주제조 설비 및 공정개발, (2단계) 저궤도 우주제조 설비 구축 및 생산기술 확보, (3단계) 미세중력 활용 우주제품 생산</p> <p>○ 필요성</p> <p>- 뉴스페이스 시대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우주진출 목적 외 우주공간 활용을 통한 새로운 가치 및 우주신산업 창출 필요성 대두</p> <p>- 미세중력 우주환경에서 고부가가치 제품을 제조하는 우주 신산업이 등장하고 있으나, 기존 국제우주정거장을 이용한 우주제조는 비즈니스모델 도출한계</p> <p>- 글로벌 우주제조 상용화 및 선점 경쟁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주선진국 중심으로 기존 인프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우주제조 인프라 구축 추진 중</p> <p>- 국내 독자적인 우주실험·제조 인프라 부재문제를 해결하고, 우주제조 신산업 시장 선점을 위해 국내기술 기반 우주제조 전주기 플랫폼 개발 및 실증 필요</p>		
연구 범위 및 내용	<p>○ (우주제조플랫폼 개발) 우주제조 전주기 실증을 위한 ①우주제조모듈, ②회수선, ③궤도변경추진체로 구성된 무인제조플랫폼 개발</p> <p>- 개발된 플랫폼은 우주제조 맞춤형 우주발사체*에 조립되어 탑재·발사</p> <p>* 우주제조 플랫폼에 맞춘 지상지원 시설·장비 구축 및 발사체 전력·통신 시스템 공급</p>		

< 우주 소형 무인제조플랫폼 개발 세부내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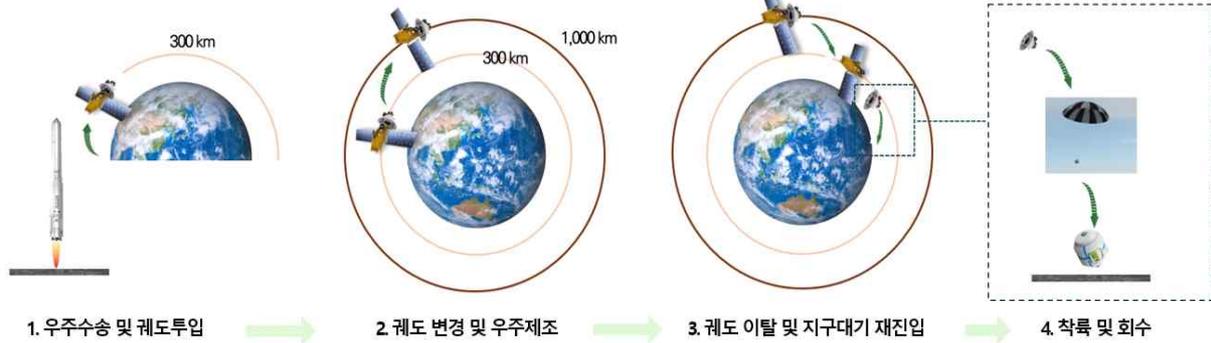


※ 그림은 참고예시용

항목	정의	세부내용
우주 제조모듈	제조물질을 탑재하여 미세중력 환경에서 무인 우주제조를 수행하는 모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탑재물질을 고려한 우주제조모듈 개발 ▪ 통신, 제어 및 환경유지(온도, 습도 등) 기술 개발 ▪ 제조물질의 미세중력 우주환경 지상모사 사전시험
회수선	제조모듈의 지구 재진입·착륙·회수를 위한 수송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성능 열 차폐재 적용 재진입 캡슐 개발 ▪ 지구 재진입 시 고온·고압 환경대응을 위한 열방호 시스템 개발
궤도변경 추진체	플랫폼 투입 후 임무궤도로의 이송, 지구 재진입을 위한 궤도이탈 및 회수선 분리를 수행하는 추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랫폼의 위치를 파악하고, 궤도를 변경하는 위성항법 기반 제어시스템 개발 ▪ 고도 유지 및 정밀궤도변경 기술 개발
비행모델 총조립	우주제조플랫폼 조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주제조플랫폼의 조립 ▪ 조립된 플랫폼의 발사체 인터페이스 결합

- (우주제조 전주기 실증) ①우주수송 및 궤도투입, ②궤도 변경 및 우주제조, ③궤도 이탈 및 지구 대기 재진입, ④착륙 및 회수로 구성된 우주제조 전주기 실증 수행
- 우주제조를 위한 구체적 실증 및 운용계획의 수립과 이를 위한 지상인프라(데이터 송수신 및 원격제어를 위한 지상국, 관제실 등) 구축 및 실증 간 데이터 확보방안 등 포함

< 우주 소형 무인제조플랫폼 전주기 실증 세부내용 >



※ 자세한 투입 및 임무고도는 주요 개발사양을 참조

항목	정의	세부내용
우주수송 및 궤도투입	발사 준비 및 플랫폼의 저궤도투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주제조 맞춤형 지상 지원 시설·장비 구축 우주제조 맞춤형 발사체 전력·통신 공급*
궤도변경 및 우주제조	미세중력 환경 구현을 위해 저궤도에 투입된 플랫폼 궤도변경 미세중력 우주환경 하 제조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사체에서 분리된 플랫폼의 초기 운영 미세중력 요구 조건에 따른 궤도변경 미세중력 환경 궤도 유지 및 우주제조 수행
궤도이탈 및 지구 재진입	지구 재진입을 위한 궤도이탈 추력제공 및 회수선 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탈궤도를 위한 추력 생성 및 자세 제어 재진입 수행 후 낙하산 전개·착륙·회수
착륙 및 회수	회수선 지구 재진입 후 착륙 및 제조물질 회수**	

* 발사 준비 및 운송 간 탑재체의 통신과 전력공급을 통해 제조물질의 모니터링 및 환경유지 구현
 ** 착륙위치 탐색을 위한 통신수단을 마련하고, 우주제조물질 회수 후 지상검증을 수행

○ 주요 개발사양

항목		성능 및 기능 요구사항	비고
우주 소형 무인 제조 플랫폼	전체 사양	▪ (구성) 제조모듈, 회수선, 궤도변경추진체	-
		▪ (임무기간) 최소 3개월(궤도발사~지상착륙)	-
		▪ (투입고도) 300km 이상	-
		▪ (임무고도) 500km~1,000km ▪ (미세중력) $10^{-3}g \sim 10^{-6}g$ ▪ (크기) 국내 소형발사체 페어링 탑재크기 ※ 예) 직경 0.6m × 길이 1.2m ▪ (무게) 150kg 이하 ※ 제조모듈, 회수선 궤도변경 추진체 등 플랫폼 전체기준	제조모듈의 요구에 따른 임무고도 선정
각 시스템	제조 모듈	▪ 2U(100mm×100mm×200mm) 이상 ▪ 온도 4°C~30°C / 습도 60% 이하 유지	-
	회수선	▪ 재진입 안정성을 위한 캡슐 형상 ▪ 지구 재진입 시 내부 온도 180°C 이하 유지 ▪ 착륙 후 제조물질 회수를 돕기위한 통신 제공	구현가능한 회수선 착륙반경 별도제시
	궤도 변경 추진체	▪ 궤도변경을 위한 속도증분 700m/s 이상 ▪ 우주제조간 미세중력 환경 유지를 위한 진동·가속 저감 운영	최대 임무고도 1,000km 구현가능
발사체*		▪ 투입고도 300km 이상/투입중량 150kg 이상 ▪ 발사대기 중 제조모듈 전력·통신 공급	-
지상국		▪ 하루 2회 이상 교신 가능	교신 인프라 확보 및 운용방안 등 별도제시

※ 우주제조플랫폼은 궤도 투입 후, 궤도변경을 수행·실증

* 국내 다양한 소형발사체 활용을 우선시하여 연구계획을 수립하되, 사업기간 내 국내 소형발사체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누리호, 해외 발사체 활용 대안 및 그에 따른 연구개발 계획의 변경 등을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하여야함

추진 방법

○ 연도별 추진방안

구분	주요내용
1차년도('26)	▪ 시스템 수준의 개념설계 및 규격서 개발, 검증방안 수립
2차년도('27)	▪ 시스템 기본설계 완료
	▪ 플랫폼 인증모델(EQM) 개발 및 지상시험
3차년도('28)	▪ 인증모델 시험 결과를 반영한 시스템 상세설계 및 비행모델 개발
4차년도('29)	▪ 체계통합 및 환경·발사 적합성 시험
	▪ 우주제조플랫폼 1차 발사 및 전주기 실증
5차년도('30)	▪ 우주제조플랫폼 비행모델 보완
	▪ 우주제조플랫폼 2차 발사 및 전주기 실증

※ 주관부처(우주항공청)와의 협의를 통해 우주제조플랫폼 전주기 실증일정 조정가능

연구 산출물

- 국내기술 기반 우주제조플랫폼 2기 개발
- 우주제조플랫폼의 우주환경 전주기 실증 2회 수행

기간 및 예산

- (선정과제) 1개 과제
- (연구기간) '26.4 ~ '30.12
- (연구비) 475억원(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26.4~'26.12	'27.1~'27.12	'28.1~'28.12	'29.1~'29.12	'30.1~'30.12	
연구비	3,000	7,100	15,200	13,200	9,000	47,500

- ※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정부의 예산사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 19조 3항에 따름
- ※ 간접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에 의해 계상하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55조 및 제37조제2항제4호에 의거하여 5% 적용

기타

- (우주제조 대상 물질) 민간의 우주 신산업 진출 등을 위해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와 향후 성과활용(상업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우주제조 대상 물질을 제안하여야 함
 - * 우주제조 대상 물질은 주관부처의 요청에 따라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정가능
 - ※ 회수된 제조물질에 대한 지상에서의 분석 계획을 연구계획서에 제시
- (지구 재진입 및 착륙) 회수선의 안정적인 지구 재진입 및 착륙(해외 착륙장 포함)과 관련된 기술 및 검증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사전조치 필요사항) 주관기관은 우주제조 전주기 실증 및 회수한 플랫폼, 제조물질의 국내로의 반입 등 사전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 계획을 제안하여야함
 - * 예) 플랫폼의 발사, 지구 재진입·착륙 및 우주물체 등록, 보험가입, 회수선·제조물질의 국내(지상) 반입 등
 -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관련사항에 대한 예산을 사업비 내 반영하여야 함
 - ※ 주관부처는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법·제도적 사항과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수행불가능한 부처협력 또는 국외 정부기관 간 협력 지원예정
- (위험 관리) 일정·비용·기술 등의 위험요소 관리계획이 연구계획서에 제시되어야 함
 - ※ 전주기 실증 간 지구 재진입 시 궤도이탈 등 이상 시 대책 및 대응방안, 단계별 중단 전환에 대한 의사결정 방안 등 제시
- (연구개발기관) 우주제조플랫폼 개발 및 실증이 가능한 산·학·연 등 자율구성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대학 또는 연구소로 구성
 - 전주기 실증을 위한 추진체계와 기관별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협력 약정 체결을 통해 이를 제시하여야 함